



대한민국 재도약의 힘,
창조경제



- 지역특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
**지역특화 제품개선 R&D사업
설명회 자료집**

2017. 3. 27.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목 차

① 지역특화 제품개선 기술개발사업 설명자료

②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설명자료

③ 지역특구 활성화 방안 설명자료



대한민국 재도약의 힘,
창조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1 지역특화 제품개선 기술 개발사업 설명자료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17년 대구·경북 지역특화R&D사업 설명회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사업개요

 개별 사업공고 시 일부내용 변경 가능

사업개요

지역특구 R&D지원사업(지역특화사업)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역특구 내 위치하면서 특구상품 제조하는 중소기업(지역특구 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발급)

유형	신청자격
조합	· 지역특구 내 조합 또는 과제신청기간 종료 전까지 결성 완료 가능한 조합
개별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지역특구 내 위치한 기업 * 연구원이나 대학 등 위탁기관 포함시 우대
컨소시움	· 3~5개 기업으로 구성된 기업 집단

- 주1) 조합 내 기업이 모두 참여하지 않아도 무관하나, 참여기업에 한해서는 협약서(각서) 작성
- 주2) 조합(컨소시움) 내 선도기업을 자체적으로 추대, 선도기업이 협약 체결 등 각종 자료 취합 및 행정절차 주도적 진행
- 주3) 조합, 컨소시움의 경우 과제신청 전 기술 공동개발 협약 완료 필수
- 주4) 협약서 내용으로 분쟁을 방지 가능하도록 작성

- * 협약서 내용 : 사업비 사용 계획의 상호 동의, 개발분야 및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 개발기술 공동 사용 및 판로 공동확보 등
- ** 분쟁발생시 민형사상 소송으로 해결

사업개요

지역특구 R&D지원사업

- 신청기간 : 4.1 ~ 4.30 18:00까지, 온라인 접수(smtech.go.kr)
- 지원규모 : 5억원(과제당 5천만원 한도, 75% 이내 정부지원)
- 추진 프로세스
 - 접수 → 서면평가(글로벌역량) → 현장평가(사업성 전반 평가) → 심의조정위원회(서면 검토) → 선정
- * 공고 확인 필수, 인터넷 신청, 1,2차 평가(지원자 부족시 1차평가 생략가능)
- 문의사항 : 053-659-2288(대구경북중기청 제품성능기술과)

주요사항

- 2017년도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과 동일한 프로세스
 - 지침은 제품공정개선사업의 지침을 따름
- (품목) 지정된 품목은 없으나, 지역특구 내 기업이면서 지역특구 상품을 제조하는 기업
- (선정평가) 수출 실적(직/간접) 및 수출계획 필수

선정평가(1)

지역특구 R&D지원사업

● (1차) 5월 첫째주(예정), 서면평가

- 수출인프라(35)
- 시장이해역량(25)
- 수출마케팅실행역량(25)
- 재무건전성(15)

글로벌역량진단 평가표

항목	세부 기준
수출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실적 없음 () 실적 있음 ~ 5만불 미만 () 5만불 이상 20만불 미만 () 20만불 이상 50만불 미만 () 50만불 이상 ()
1. 수출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 경영력 수출(매장) 제품의 국내외 경쟁사 대비 가격경쟁력 수준 (가격조사표 또는 대비표) 수출(매장) 제품 및 디자인 경쟁력 수출(매장) 제품의 품질 및 디자인 관련 경쟁대회 수상 또는 인증 보유 여부
2. 시장이해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매장) 제품과 관련된 국내외 지식재산권 등록 여부 (특허권, PCT 국제출원,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해외시장 조사수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보유 수준
3. 수출마케팅실행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시장에 대한 조사자료가 있음 () 해외시장조사에 대한 유료 자료가 있음 () 해외시장조사에 대한 분석력 있는 기업(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유료 자료가 있음 () 일정량의 현지출장조사를 통한 해외시장조사보고서 보유 () 해외시장보고서 또는 기업에서 보유한 수출(매장)에 대한 정보수준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 체크(중복체크 가능) 수출목적 정보대상 code 4명위 기록 수출물류의 관세율 FTA 수혜 여부, FTA 활용방안 수출물류의 수출(매장)국가 관련 관세(관세) 정보 (관세포함 신청기간, 기프시기, 관세장소, 통관일자, 관세회 신형 등) 관련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신청 방법과 비용) 현지 잠재고객 정보 최종소비자 소비행태와 접근전략 현지시장 경쟁제품 동향(경쟁사 가격 등) 일반정보 수출(매장)국가 비즈니스 매너, 거래 관행, 지역·유교권 차이점
수출준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진의 수출의지 최근 2년간 수출준비 의지(중복체크) 경영진(임원)의 전담자로부터 수출인실적 1회 이상 참여 경영진(임원)의 수출관련 해외(네트워킹 모임 등) 참여 경영진(임원)의 해외마케팅을 위한 현지출장 해외마케팅 전략 실행 수준 자체적인 해외마케팅전략 계획이 없다. () 단순 수출 및 매출계좌만 수립되어 있다. () 2년 이상의 행정기, 목표, 리스크 대응, 구체적인 전략이 있다. ()

5

선정평가(2)

지역특구 R&D지원사업

● (2차) 5월 둘째주(예정), 현장평가

- 기술개발 전반(사업화 역량 등) 평가 :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역량(20점)
-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40점)
- 개발결과의 기대효과 및 사업성(40점)

* 글로벌 역량 평가 : 현재 수출실적이 없어도

구체적인 수출계획으로 대체 가능

평가 배점표(지역특구사업)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배 점	평 점
1.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역량 (20)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10)	- 선정과제가 제품공정 개선의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	10 8 6 4 2
	기술개발 역량 (10)	- 개발하고자하는 과제에 적합한 기술력 보유 여부	10 8 6 4 2
2.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40)	기술개발 내용의 적정성 (15)	- 기존 제품(기술)과의 차별성 등	15 12 9 6 3
	기술개발 추진일정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10)	- 추진일정의 적정성 - 역할분담의 적정성	10 8 6 4 2
	기술개발 목표의 창의성 및 적정성 (15)	- 기술개발의 창의성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기간의 적정성	15 12 9 6 3
3. 개발결과의 기대효과 및 사업성 (40)	기술개발의 사업화 (15)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15 12 9 6 3
	고유성(10)	- 과제 수행 중 연구인력 고유성 및 개발 후 고유유발 효과	10 8 6 4 2
글로벌 역량 (15)	- 글로벌 진출가능성(수출실적, 수입대체 증명자료 등) 참조, 수출 관련 인력 현황, 목표 해외시장 이해도, 현지화 계획, 해외수출담당 확보계획 등	15 11 7 3 0	
합 계			80

□ 종합평가의견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6

기타사항

사업 참여 부담 완화

-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 한정(사업별 5 ~ 10페이지)
- 총량제(연간 동시 수행과제수 2개로 제한) 적용 예외 사업 확대(2개 → 6개) (*졸업제 : 총 4회)
- 동일사업에 대한 연간 과제 신청횟수 확대(1회 → 2회)
- 사업비 사용 은행 및 카드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기존 기업은행으로 제한)

사후 관리

- 미납된 환수금 강제 징수 근거 마련
- 연구비 유용에 따른 최대 참여제한 기간 확대(5년 → 10년)
- 제재부가금(유용금액의 최대 5배 부과) 등 기존 연구비 유용방지 제도 지속 운영

9

종합 정리

✓ 지역특구 R&D지원사업

- 본 사업은 지역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 개별 기업, 조합, 컨소시움 참여 가능
 - 단, 연구기관 참여, 조합, 컨소시움(개발성과 공유) 우대(가점)
- 4월중 접수, 5월 평가 및 협약진행
- 접수는 smtech.go.kr 홈페이지에서 진행
- 접수방법은 smtech.go.kr > 고객지원 > 온라인매뉴얼 > 시스템매뉴얼 > 2.과제신청 > 단계별 신청 참고
- 협약서 내용 꼼꼼하게 확인 작성 필수
 - 분쟁 발생시 중소기업청에서 해결 불가
- 선도기업 추대 필수

10



지원방법



1. 지원방법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홈페이지 공고
- * 사업별 추진일정은 통합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 참조



1STEP 사전준비사항 - ① 회원가입 확인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과제관리
연구비집행
온라인정산
지원사업안내
정보마당
고객지원
사이트소개

[HOME](#)
[개인정보처리방침](#)
[로그인](#)
[회원가입](#)
공공데이터제공
신청대응포기

온라인과제관리

- > 과제참여허수조화(졸업제관련)
- > 과제신청
- > 신청안내
- > 과제신청
- > 신청내역조회
- > 산학연 기업 신청
- > 정책연구회 과제신청
- > 기술로드맵 과제신청
- > 초중급R&D인력지원
- > 전자평가발표자료등록
- > 과제평가
- > 물린평가
- > 연구장비사업관리(주관)
- > 연구장비사업관리(참여)
- > 전자협약
- > 보고서제출
- > 연구노트
- > 성과입력
- > 제재조치
- > 온라인수요조사

신청안내

과제신청 시 필요한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STEP >

사전 준비사항

- 회원가입 확인
- 기관등록 확인
- 참여제한 확인
- 제출서류 작성

1. 사전 준비사항

1) **확인 사항**

- 과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 과제 신청 전 미리미리 확인하시기 바

구분	내용
회원가입 확인	과제 신청 시 대표자
기관등록 확인	과제를 수행하는 모
참여제한 확인	과제 수행하는 기관
제출서류 작성	신청하려는 사업에 따라 과제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작

2) **과제신청 지원 서비스**

중기 R&D 통합정보시스템은 과제신청 업무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용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제신청 업무를 진행하시기 전에 아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시스템 매뉴얼
바로가기 >

시연 동영상
바로가기 >

신청 연습하기
바로가기 >

동영상 강의
바로가기 >

QUICK MENU

- 이메일주소
- 사이드로그
- 유형별사업
- 과제접수
- 연구비집행
- GSA
- TOP
- 매뉴얼
- 과제신청

중소기업청 종합 고객지원센터

1357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13

1STEP 사전준비사항 - ② 기관등록 확인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과제관리
연구비집행
온라인정산
지원사업안내
정보마당
고객지원
사이트소개

[HOME](#)
[개인정보처리방침](#)
[로그인](#)
[회원가입](#)
공공데이터제공
신청대응포기

온라인과제관리

- > 과제참여허수조화(졸업제관련)
- > 과제신청
- > 신청안내
- > 과제신청
- > 신청내역조회
- > 산학연 기업 신청
- > 정책연구회 과제신청
- > 기술로드맵 과제신청
- > 초중급R&D인력지원
- > 전자평가발표자료등록
- > 과제평가
- > 물린평가
- > 연구장비사업관리(주관)
- > 연구장비사업관리(참여)
- > 전자협약
- > 보고서제출
- > 연구노트
- > 성과입력
- > 제재조치
- > 온라인수요조사

신청안내

과제신청 시 필요한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STEP >

사전 준비사항

- 회원가입 확인
- 기관등록 확인
- 참여제한 확인
- 제출서류 작성

1. 사전 준비사항

1) **확인 사항**

- 과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
- 과제 신청 전 미리미리 확인하

구분	내용
회원가입 확인	과제 신청 시
기관등록 확인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참여제한 확인	과제 수행하는 기관 및 구성원이 정부출연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과제
제출서류 작성	신청하려는 사업에 따라 과제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작

2) **과제신청 지원 서비스**

중기 R&D 통합정보시스템은 과제신청 업무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용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제신청 업무를 진행하시기 전에 아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시스템 매뉴얼
바로가기 >

시연 동영상
바로가기 >

신청 연습하기
바로가기 >

동영상 강의
바로가기 >

QUICK MENU

- 이메일주소
- 사이드로그
- 유형별사업
- 과제접수
- 연구비집행
- GSA
- TOP
- 매뉴얼
- 과제신청

중소기업청 종합 고객지원센터

1357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14

1STEP 사전준비사항 - ③ 졸업제(과제참여횟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OME 로그인 관리자 회원가입신청 **공공데이터제공** 마이페이지 전체메뉴보기

온라인과제관리 연구비집행 온라인정산 지원사업안내 정보마당 고객센터 사이트소개

온라인과제관리

- ▶ 과제참여횟수조회(졸업제관련)
- ▶ 과제신청
- ▶ 전자평가발표자료등록
- ▶ 과제평가
- ▶ 콜린평가
- ▶ 연구장비사업관리(주관)
- ▶ 연구장비사업관리(참여)
- ▶ 전자협약
- ▶ 보고서제출
- ▶ 연구노트
- ▶ 성과입력
- ▶ 제재조치
- ▶ 온라인수요조사

과제참여횟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및 신학연 협력사업의 과제참여횟수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검색
과제 상세정보를 검색해 조회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번호 검색하기

▶ 과제관리 > 과제집행 > 과제참여횟수조회

사업유형별 참여횟수

사업유형구분	저번확대형	인프라조성형	총 참여횟수
참여횟수	1	0	2

참여과제 (단위:천원)

사업유형구분	과제번호	과제명	과제기관	기관역할	참여연도	총정부출연금
선택집중형				주관기관	2012	190,000
저번확대형				주관기관	2011	170,792,000

1

QUICK MENU
마이페이지
사업공고
규정/도움말
과제집행
연구비집행
GSA
TOP

15

1STEP 사전준비사항 - ④ 참여제한 확인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OME 로그인 관리자 회원가입신청 **공공데이터제공** 마이페이지 전체메뉴보기

온라인과제관리 연구비집행 온라인정산 지원사업안내 정보마당 고객센터 사이트소개

과제신청 / 전자평가 발표자료 등록 / 과제평가 / 연구장비사업관리 / 전자협약 / 보고서제출 / 연구노트 / 성과입력 / 제재조치 / 온라인수요조사

온라인과제관리

- ▶ 과제참여횟수조회(졸업제관련)
- ▶ 과제신청
- ▶ 신청안내**
- ▶ 신청내역조회
- ▶ 산학연 기업 신청
- ▶ 정책연구과 과제신청
- ▶ 기술로드맵 과제신청
- ▶ 초중급R&D인력지원
- ▶ 전자평가발표자료등록
- ▶ 과제평가
- ▶ 콜린평가
- ▶ 연구장비사업관리(주관)
- ▶ 연구장비사업관리(참여)
- ▶ 전자협약
- ▶ 보고서제출
- ▶ 연구노트
- ▶ 성과입력
- ▶ 제재조치
- ▶ 온라인수요조사

신청안내
과제신청 시 필요한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1STEP

사전 준비사항

- 희망가입 확인
- 기관등록 확인
- 참여제한 확인**
- 제출서류 작성

1. 사전 준비사항

확인 사항

- 과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제 신청 전 미리미리 확인하십시오.

구분

희망가입 확인 과제 신청 시

기관등록 확인 과제를 수행할

참여제한 확인 과제 수행하는 기관 및 구성원이 정부출연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과제 접수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작성 신청하려는 사업에 따라 과제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십시오.

과제신청 지원 서비스
중기 R&D 통합정보시스템은 과제신청 업무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QUICK MENU
마이페이지
사업공고
규정/도움말
과제집행
연구비집행
GSA
TOP

16

1STEP 사전준비사항 - ④ 참여제한 확인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HOME 로그인 회원가입 **공공데이터제공** 마이페이지 전체메뉴보기

온라인과제관리 연구비집행 온라인정산 지원사업안내 정보마당 고객지원 사이트소개

온라인과제관리

- ▶ 과제참여횟수조회(출입제한연)
- ▶ 과제신청
- ▶ 전자평가발표자료등록
- ▶ 과제평가
- ▶ 물린평가
- ▶ 연구장비사업관리(주관)
- ▶ 연구장비사업관리(참여)
- ▶ 전자협약
- ▶ 보고서제출
- ▶ 연구노트
- ▶ 성과입력
- ▶ **제재조치**
- ▶ 중소기업청 제재조치
- ▶ NTIS 제재조치
- ▶ 온라인수요조사

중소기업청 제재조치

중소기업청 제재조치 목록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제재대상

전체 평가관리용 제재 기술정보전송결과 제재 신약면접외 제재

No	제재대상	업체명(성명)	제재기간	제재유형	과제	제재사유
조회결과가 없습니다.						
1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_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06호, 2012.03.02)

제38조(제재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법사유에 따른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발표 3의 기준에 의해 국가기술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토록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때 참여제한의 사유를 둘 이상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뜻까지 합산할 수 있다.

1.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2. 상당한 결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제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제48조를 위반한 경우
3. 상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4. 상당한 사유 없이 기술로물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5. 상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6. 출연금을 사업비의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7. 제27조에 따른 직종보고서, 제32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상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8.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9. 부도 또는 폐업으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10. 위법입력, 허위, 성략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 해약된 경우
11. 상당한 사유 없이 수행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개인사업자 제외)

QUICK MENU

- ▶ 마이페이지
- ▶ 사업공고
- ▶ 규정도서지
- ▶ 과제경수
- ▶ 연구비집행
- ▶ Q&A
- ▶ TOP

1STEP 사전준비사항 - ⑤ 제출서류 작성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HOME 로그인 회원가입 **공공데이터제공** 전체메뉴보기

온라인과제관리 연구비집행 온라인정산 지원사업안내 정보마당 고객지원 사이트소개

온라인과제관리

- ▶ 과제참여횟수조회(출입제한연)
- ▶ 과제신청
- ▶ 신청안내
- ▶ 과제신청
- ▶ 신청내역조회
- ▶ 신약면접 기업 신청
- ▶ 정책연구회 과제신청
- ▶ 기술로드맵 과제신청
- ▶ 초중급R&D인력지원
- ▶ 전자평가발표자료등록
- ▶ 과제평가
- ▶ 물린평가
- ▶ 연구장비사업관리(주관)
- ▶ 연구장비사업관리(참여)
- ▶ 전자협약
- ▶ 보고서제출
- ▶ 연구노트
- ▶ 성과입력
- ▶ 제재조치
- ▶ 온라인수요조사

신청안내

과제신청 시 필요한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STEP

사전 준비사항

- 회원가입 확인
- 기관등록 확인
- 참여제한 확인
- 제출서류 작성

2 STEP

과제신청 방법

- 자면화대형
- 인포라조성형

3 STEP

필수S/W 확인

- 문서변환 장애
- 파일업로드장애
- Active-X 장애

4 STEP

신청하기

- 사업분야/ 신청대상물 확인 후, 과제신청을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전 준비사항

1.1 확인 사항

- o 과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 o 과제 신청 전 미리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준비사항	확인하기
회원가입 확인	과제 신청시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반드시 사전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input type="button" value="확인하기"/>
기관등록 확인	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은 과제 신청 전 기관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input type="button" value="확인하기"/>
참여제한 확인	과제 수행하는 기관 및 구성원이 정부출연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과제 접수할 수 없습니다.	<input type="button" value="확인하기"/>
제출서류 작성	신청하려는 사업에 따라 과제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type="button" value="확인하기"/>

1.2 과제신청 지원 서비스

중기 R&D 통합정보시스템은 과제신청 업무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용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제신청 업무를 진행하시기 전에 아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QUICK MENU

- ▶ 마이페이지
- ▶ 사업공고
- ▶ 규정도서지
- ▶ 과제경수
- ▶ 연구비집행
- ▶ Q&A
- ▶ TOP
- ▶ 과제신청

1STEP 사전준비사항 — ⑤ 제출서류 작성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과제관리 연구비집행 온라인정산 지원사업안내 **정보마당** 고객지원 사이트소개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자료마당**
- 규정및서식
 - 발안자료
 - 산학연회원 주소록
- 참여마당
- 성공전시관
- 정보공유
- 지원과제
- 관련시스템
- 기술연계

규정 및 서식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의 규정 및 서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자율 구분별 보기 전체목록 보기

사업의 해당 연도를 선택하세요. 2016년 검색

사업명 기술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명 사업별규정 신청 협약 보고서 기술로 참고 기타

기술혁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융합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국내수요처)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민관공동투자)
공공구매조건부 기술사업화(국토부)
시장창출형 중소기업개발

통합규정

통합규정과 사업계획서 양식을 download

중소기업 R&D 고객지원센터
1661-1357
평택시인 (평택 0900-1900)

빅다운
- 마이클로그
- 첨부파일
- 다운로드
- PDF뷰어

19

2STEP 과제신청 방법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1 STEP

사전 준비사항

- 회원가입 확인
- 기관등록 확인
- 참여제한 확인
- 제출서류 작성

2 STEP

과제신청 방법

- 저변확대형
- 인프라조성형

3 STEP

필수S/W 확인

- 문서변환 장애
- 파일업로드장애
- Active-X 장애

4 STEP

신청하기

- 사업분류/ 신청대상을 확인 후, 과제신청을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과제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신청: <http://www.smtch.go.kr>

01 회원가입 > 02 로그인 > 03 과제관리 > 04 과제신청 > 05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 ‘2015년 창업성장이공계 창업꿈나무 사업’의 경우, 온라인 클린평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현행 오프라인 평가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합니다. 과제 신청 전 클린평가 가이드를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클린평가 가이드 바로가기 >](#)

20

3STEP 필수 S/W 확인 - 조치방법 안내 (1/2)

1 STEP > 2 STEP > **3 STEP >** 4 STEP

- 1 STEP** 사전 준비사항
 - 회원가입 확인
 - 기관등록 확인
 - 참여제한 확인
 - 제출서류 작성
- 2 STEP** 과제신청 방법
 - 저변확대형
 - 인프라조성형
- 3 STEP** 필수S/W 확인
 - 문서변환 장애
 - 파일업로드장애
 - Active-X 장애
- 4 STEP** 신청하기
 - 사업분류/ 신청대상을 확인 후, 과제신청을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제공합니다.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의 프로그램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연락처 : 1357

설치 여부 확인 / 수동설치 파일 다운로드

01. 현재 페이지는 처음 로딩시 자동으로 모뎀 설치를 시도 합니다.
02. WindowsXP SP2 이후의 운영체제인 경우, 자동 모뎀 설치를 위한 노란색 안내 문구가 페이지 상단에 보일 수 있습니다.
03. 노란색 안내 문구가 보일 경우 안내문구를 클릭하고 'ActiveX 컨트롤 설치'를 선택하여야 자동 설치가 진행됩니다.
04. '설치여부 확인'의 '체크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각각의 모듈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합니다.
05.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모듈이 있을 경우 '수동설치 파일 다운로드' 테이블에서 해당 모듈의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06. 수동설치 성공시 현재 페이지에서 'FS' 버튼을 누른후, 다시 한번 '체크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모듈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합니다.
07. 수동설치 후에도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모듈이 있을경우, 해당모듈의 제거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한 후 (모듈을 제거한 후) 다시 설치합니다.
08. 모든 모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STEP 필수 S/W 확인 - 조치방법 안내 (2/2)

1 STEP > 2 STEP > **3 STEP >** 4 STEP

- 1 STEP** 사전 준비사항
 - 회원가입 확인
 - 기관등록 확인
 - 참여제한 확인
 - 제출서류 작성
- 2 STEP** 과제신청 방법
 - 저변확대형
 - 인프라조성형
- 3 STEP** 필수S/W 확인
 - 문서변환 장애
 - 파일업로드장애
 - Active-X 장애
- 4 STEP** 신청하기
 - 사업분류/ 신청대상을 확인 후, 과제신청을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여부 확인

대상 모듈	설치확인	체크결과
인증서모뎀	· 체크하기	인증서 모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동설치 파일 다운로드

구분	용도	대상 모듈	설치파일
전자인증	전자서명인증서실행파일	32bit	Win98/Win2000/XP/Vista VestCertSetup.exe

4STEP 신청하기 - 사업분류별 과제신청하기

☐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1 STEP 사전 준비사항 - 회원가입 확인 - 기관등록 확인 - 참여제한 확인 - 제출서류 작성	2 STEP 과제신청 방법 - 선택집중형 - 저변확대형 - 인프라조성형	3 STEP 필수S/W 확인 - 문서변환 장애 - 파일업로드장애 - Active-X 장애	4 STEP 신청하기 - 사업분류/ 신청대상을 확인 후, 과제신청을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4. 신청하기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이 아닌 사업은 과제신청 진행 중, '공고목록'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공고문 등을 통하여 신청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정보 확인 : Home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신청기간 마감에 임박하면 사용자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반드시 접수중 버튼을 클릭하시어 접수중을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기간 이전의 출력시간이 기재된 접수중 미 보유시, 미접수에 대한 민원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하기

- 신청하기 전에, 사전준비사항, 신청방법, 장애조치방법 등의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 과제신청의 종류는 중소기업형 R&D 지원유형인 선택집중형 사업, 저변확대형 사업, 인프라조성형 사업에 따라 나뉩니다. 사업분류, 신청대상과제를 확인 후, 해당하는 과제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내	링크
선택집중형 과제신청	일반R&D 과제유형에 속하며,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의 예산상사 신청, 건강관리 연계형이 아닌 일반R&D 과제제의 신청 및 단계과제신청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청하기
저변확대형 과제신청	중진공 및 기보 등을 통해 건강관리 적합사업이 결정된 과제의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품공정기술혁신개발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건강관리 연계형" 사업의 R&D 과제등록 및 신청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청하기
인프라조성형 과제신청	R&D기획연계지원사업과 연구장비비동공지원사업의 참여기업신청, 주관기관 신청이 해당됩니다.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요령 - 경영성과 등급조회

• 2013년도 과제부터 경영성과 등급에 따른 가감점이 적용됩니다.

마이페이지

- 개인화페이지
- 개인정보관리
- 기관정보관리
- 사용로그조회
- 전자공지알
- 평가위원
- 관심사업등록
- 나의실문보기
- 정보조회**
- 과제실어필수조회

추적조사 결과조회

경영추적조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경영추적조사 결과조회

목적 : 경영성과 관련장 추적조사

1) 관련근거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요항 제29조(결과와활용)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7절(다항(우대 및 감점점수))

2) 목적 : R&D 수행기업의 경영성과 추적조사를 통해 사업화성과에 따른 등급하향 격중하여 수행기업의 향후 사업 재입에서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경영성과 최종등급을 적용

3) 적용대상 : 3년 조사가 완료되는 08년 종료과제 수행기업
 - 조사기 완료되는 2008년 종료과제의 경우 경영성과 추적조사 최종등급을 적용
 (2012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기준 적용)

4) 적용기간 : 2012년 신규과제 신청시부터 성과등급을 3년간 적용
 - 해당 과제의 종료기에 대해 2013년 신규과제 신청시부터 성과등급을 3년간 적용

5) 적용방법 : 경영성과 최종추적조사 결과 작성한 1, 2차 조사의 종합 경영성과 등급을 적용하여 총 5등급으로 적용
 - 경영성과 최종추적조사 등급 적용은 2년의 성과등급의 평균 적용

※ 근거 : 2012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기준 적용

[표 1] 경영성과 등급에 따른 신규과제 신청시 가감점 적용(2012년부터 적용)

경영성과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	-----	-----	-----	-----	-----

※ E등급의 해당사유

신규과제 신청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 최종추적조사 미등록기업의 경우 성과등급 E등급을 적용하고 2점 감점 적용

※ 근거 : 2012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기준 적용

QUICK MENU

- 02000001
- 02000002
- 02000003
- 02000004
- 02000005
- 02000006
- 02000007
- 02000008
- 02000009
- 02000010

[경영성과 등급조회](#)

온라인 신청 요령(과제신청)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HOME 로그인 참가신청서
공공데이터제공 마이페이지 전체메뉴보기

온라인과제관리
연구비집행
온라인정산
지원사업안내
정보마당
고객지원
사이트소개

온라인과제관리

- ▶ 과제참여횟수조회(출입제관련)
-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과제신청
 - 신청내역조회
 - 산학연 기업 신청
 - 정책연구회 과제신청
 - 기술로드맵 과제신청
 - 초중급R&D인력지원
- ▶ 전자평가발표자료등록
- ▶ 과제평가
- ▶ 클린평가
- ▶ 연구장비사업관리(주관)
- ▶ 연구장비사업관리(참여)
- ▶ 전자협약
- ▶ 보고서제출
- ▶ 연구노트
- ▶ 성과입력
- ▶ 제재조치
- ▶ 온라인수요조사

과제신청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학연 협력사업의 본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과제관리 > 과제접수 > 과제신청

2 지원사업구분

전체
 선택집중형
 저변확대형
 인프라조성형
 기타

2 과제신청대상 공고
※ 과제신청 전 반드시 세부공고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세부공고명	공고일	신청기간	상세보기	신청하기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테스트 세부공고	2014-01-09	2014-01-08 ~ 2014-01-30	상세보기	신청하기

◆ 신청하기 클릭

QUICK MENU

- 마이페이지
- 사립공고
- 구명사업서
- 과제접수
- 연구비집행
- Q&A
- 100
- 매뉴얼
- 과제신청

온라인 신청 요령(과제신청)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HOME 로그인 참가신청서
공공데이터제공 마이페이지 전체메뉴보기

온라인과제관리
연구비집행
온라인정산
지원사업안내
정보마당
고객지원
사이트소개

온라인과제관리

- ▶ 과제참여횟수조회(출입제관련)
-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과제신청
 - 신청내역조회
 - 산학연 기업 신청
 - 정책연구회 과제신청
 - 기술로드맵 과제신청
 - 초중급R&D인력지원
- ▶ 전자평가발표자료등록
- ▶ 과제평가
- ▶ 클린평가
- ▶ 연구장비사업관리(주관)
- ▶ 연구장비사업관리(참여)
- ▶ 전자협약
- ▶ 보고서제출
- ▶ 연구노트
- ▶ 성과입력
- ▶ 제재조치
- ▶ 온라인수요조사

2 업체정보

업체명	사업자번호
	1

GUIDE > 기관정보 안내

- 위 기관정보는 개인정보의 소속기관 정보를 기준으로 조회되었습니다.
- 신청하시려는 기관정보와 상이한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관리 메뉴에서 소속사업체 정보를 변경 후 재로그인 하세요.

2 공고정보

사업분류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사업유형구분	인프라조성형
공고	2016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세부공고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참여기업)		
공고일	2015-12-30	신청기간	2016-01-18 ~ 2016-12-30
첨부파일	2016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hwp		
제출서류	1. 2016년도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서.hwp  2. 2016년도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서약서.hwp 		

◆ 검토 후 다음클릭

QUICK MENU

- 마이페이지
- 사립공고
- 구명사업서
- 과제접수
- 연구비집행
- Q&A
- 100
- 매뉴얼
- 과제신청

▶ 다음

온라인 신청 요령(접수시 사전체크사항)

● 주의 !! 모든 확인항목에 체크되어야 과제접수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2. 체크리스트

1. 주관기관 대표자 홈페이지 설정 가입 유효를 확인했습니다.
2. 과제책임자, 실무자 홈페이지 설정 가입 유효를 확인했습니다.
3. 참여업체에 대한 일반정보를 숙지했습니다. (주대가장 정보, 사업자번호, 대표자 정보)
예) Inno-biz, 벤처, 여성기업 등 참여 및 공동개발기관 정보
4. 주관기관이 홈페이지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업체 대표자로 로그인 한 후, 업체 신규 등록을 수행하였습니다. (동북권 사업자번호 존재 시 1865-1957로 문의하고 법인등록번호는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경우여동일해 기재된 한국신용평가 연혁자를 통해 사전확인 및 등록)
5.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위탁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이 참여제한 조치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체 확인 요청)
6. 대표자 계정으로서 업체 추가정보 등록 및 정보 최신화를 수행하였습니다.
7. 각 책임자, 실무담당자, 대표자의 개인정보 최신화를 수행하였습니다.
8. 관련사업의 신청서식 확인 및 다운로드 작성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9. 관련사업의 신청서식 다운로드 및 사업계획서 문서작성을 수행하였습니다.
10. 과제 중복성 자체검토(ceamch.go.kr, indgate, nbs.go.kr)를 수행하였습니다.
11. 18년도부터 시행된 통일체 관리지침에 따른 과제참여경수 조회를 수행하였습니다.
12. 과제 접수를 위한 필요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신청자는 상기 항목들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과제책임자 등의 확인을 거쳤으며, 통합관리시스템에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기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기재된 사항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과제 선정제외 및 중단,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있음을 재차 동의합니다.

동소기업기술개발사업사업에 신청함에 있어, 신청기업은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동소기업기술개발사업사업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및 관수에 동의하며, 아울러 신청사실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 동일사업계획서를 동시에 반 신청에 작성하여 사업비 중복 부정행위
2. 신청서 기재사항에 대한 유증 및 유증
3.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본 신청과제는 해당 사업의 관리절차에 따라 응복지향성 검토 절차를 목적으로 신청자, 개발계좌 및 목표-기워드, 기술분류 등에 대한 정보를 특정기간 동안 인터넷공사가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상기 사항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확인

전산입력 1단계 - 주관기관정보

- 1단계 : 주관기관 정보
- 해당 공고 및 지역 선택, 기업명, 주요 수행자 정보 선택 등

과제신청

공소기업기술개발사업 및 신변형사업 분야 신청을 위한 안내입니다.

01 주관기관 정보 단계
개발기관 및 기술개발계좌

02 분야/공고 선택 및 기술분류 단계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03 사업비내역 단계
제출서류 등록

1. 공고분류

사업분류: 기술혁신개발사업
 공고: 혁신기업기술개발 테스트 공고
 세부공고: 혁신기업기술개발 테스트 세부공고
 과제번호: 저장 또는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과제명: 2014년도 혁신기업기술개발 사업 테스트 과제
 과제지역: 서울
 관리기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2. 주관기관 및 과제 책임자 정보

기업명: [검색] 홈페이지

설립년월일: 상시 종업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검색]

주영산종(납종처): 생년월일

대표자: [검색] 핸드폰
전화: 팩스
이메일: 생년월일

과제책임자: [검색] 핸드폰
전화: 팩스
이메일: 핸드폰

실무담당자: [검색] 생년월일
전화: 핸드폰
이메일: 팩스

저장하기 **다음단계**

전산입력 1단계 - 개발기간 및 기술개발개요

- 1단계 : 개발기간 및 기술개발개요
- 개발기간, 개발목표 및 내용 요약(2,000글자 내외), 키워드 입력

전산입력 2단계 - 보안등급 신청 및 기술분류

- 2단계 : 보안등급 신청 및 기술분류
- 보안등급, 기술분류 선택입력 (기술분류표 참조)

기술분류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산업기술표준분류	신뢰	신뢰	신뢰	신뢰
6T분류	신뢰	신뢰	신뢰	신뢰
국가과학기술분류	신뢰	신뢰	신뢰	신뢰
국가중점과학기술	신뢰	신뢰	중점차 적용 기술	신뢰
선성장분야전략기술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적용분야	신뢰			
10대기술분류	신뢰			
한국표준산업분류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전산입력 2단계 -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1/2)

- 2단계 :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 수행기관 정보(참여 및 위탁기관 입력), 우대조건(주관기관만 입력),

01 단계: 주관기관 정보
02 단계: 보안등급 신청 및 기술분류
03 단계: 사업비내역 제출서류 등록

7. 수행기관정보
7.1 수행기관별 정보
7.2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실적(신청중 포함)
8. 참여연구원(엔지니어 등 특이 아닌 참여하는 총인원으로 입력)

주관기관, 위탁기관 등 입력

수행기관
참여역할
기관
사업자번호
책임자
우대조건
경영현황표 입력여부

우대사항
우대조건

전산입력 2단계 -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2/2)

- 2단계 :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 수행기관 정보(경영현황표(주관 및 참여기업입력)), 참여연구원(과제책임자 및 신규예정포함)

01 단계: 주관기관 정보
02 단계: 보안등급 신청 및 기술분류
03 단계: 사업비내역 제출서류 등록

7. 수행기관정보
7.1 수행기관별 정보
7.2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실적(신청중 포함)
8. 참여연구원(엔지니어 등 특이 아닌 참여하는 총인원으로 입력)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이상, 과제책임자는 30%이상

경영현황표
참여기업
기업명
참여역할
참여인원

참여연구원
참여기관
담당자
연구역할
과제책임자

※ 과제책임자는 참여연구원으로 필수추가

전산입력 3단계 - 사업비내역

- 3단계 : 사업비내역
- 사업비부담내역(정부,민간), 기관별 사업비 구성, 비목별 합계 입력

01 주관기관 정보 / 02 보조사업 신청 및 기술분류 / 03 사업비내역 제출서류 등록

과제번호: S2457244 / 과제명: test subject

9. 사업비 정보

9.1 연차별 사업비 요약

차수	정부출연금(천원)		민간부담금(천원)		계(천원)
	현금	비율(%)	현금	비율(%)	
1차	30,000	63.83%	12,000	25.53%	47,000
합계	30,000	63.83%	12,000	25.53%	47,000

9.2 기관별 사업비 구성내역

차수	구분	업체명	사업비출금(천원)		
			현금	현물	소계
1차	주관기관	케이씨정보통신(주)	42,000	5,000	47,000
	소계		42,000	5,000	47,000
	합계		42,000	5,000	47,000

9.3 사업비 비목별 합계

차수	구분	업체명	비목	현금(천원)	현물(천원)
1차	주관기관	케이씨정보통신(주)	인건비	20,000	5,000
1차	주관기관	케이씨정보통신(주)	직접비	20,000	0
1차	주관기관	케이씨정보통신(주)	간접비	2,000	0
	합계			42,000	5,000

기관별 민간부담금 분담내역

차수	구분	업체명	민간부담금(천원)		
			현금	현물	계
1차	주관기관	케이씨정보통신(주)	12,000	5,000	17,000
	소계		12,000	5,000	17,000
	합계		12,000	5,000	17,000

9.3 사업비 비목별 합계

차수	구분	업체명	비목	현금(천원)	현물(천원)
1차	주관기관	케이씨정보통신(주)	인건비	20,000	5,000
1차	주관기관	케이씨정보통신(주)	직접비	20,000	0
1차	주관기관	케이씨정보통신(주)	간접비	2,000	0
	합계			42,000	5,000

※ 차수별 현금 금액의 합계는 정부출연금 현금과 민간부담금 현금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함

전산입력 3단계 - 제출서류 등록

- 3단계 : 제출서류 등록
- 과제권한자, 연구시설장비 정보 등록 및 과제조회 동의

01 주관기관 정보 / 02 보조사업 신청 및 기술분류 / 03 사업비내역 제출서류 등록

과제번호: S2457244 / 과제명: test subject

과제권한자

선택	성명	소속	직위	부서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선임	정보화팀	042-715-2250
<input type="checkbox"/>	[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팀	정보화팀	042-715-2253

연구시설-장비 정보

• 전년도(부가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 도입 예정시 필수 등록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파일첨부 시 1건이상 등록)

선택	단계	인차	연구시설-장비명	도입예산금액(천원)	담당자	규격	수량	주요사양	사용분야	설치장소
<input type="checkbox"/>	0	1	테스트장비	10,000	[가]		1	IT	시험분석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0	2	시험분석기	30,000	[가]		1	IT5	분석	연구소

과제조회 동의여부

국가과학기술총합관리시스템(NTRI) 및 총합과제관리시스템 등에서 과제중복성 검토를 위하여 과제조회 동의의 임의조건에 동의합니다. (※ 동의여부에 따라 별도의 조회방위가 정해지긴 않으며, 신청서의 사표현으로서는 단순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과제권한자

담당자

성명: [가] / 소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부서: 정보화팀 / 연락처: 042-715-2253

도입예정 연구시설-장비 등록

연구시설-장비명: 테스트장비 / 단계: 0 / 인차: 1 / 도입예산금액(천원): 10,000 / 규격: / 수량: 1 / 주요사양: IT / 사용분야: 시험분석 / 설치장소: 연구소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연구시설 및 장비 정보 필수 입력



중소기업청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재도약의 힘,
창조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투명 · 공유 · 소통 · 협력]

2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설명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7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설명회

2017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I 추진경위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소상공인 경쟁력향상과 공동이익창출을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법령근거: 「협동조합기본법」 2012.12.1. 시행

추진 경위

- 01 | 협동조합이 **일자리복지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완적 사업모델로 부각**
- 02 | 소상공인, 대형유통점 등과 경쟁 한계 극복 위한 자발적 협업체 구성 → **공동브랜드·구매·마케팅 등 사업추진**
- 03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2)후, 다양한 형태의 **협업화 공감대 형성 및 정부지원 요구 증대**
- 04 | 기존 소상공인 교육·컨설팅 등 지원사업 성과 제고와 함께 규모의 경제효과 실현을 위해 **현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

법령상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및 동법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4. 그 밖에 소상공인 육성과 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2항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1항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목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
5년간(13~17년) 2,000개 협동조합 설립, 30,000개 소상공인 참여

추진전략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협동조합의 경영안정 및 판로개척·확대

추진과제

지원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 지원기관 역할 및 기능 분리 · 투명성 확보 및 리스크 관리 · 일자리 창출 지원 	맞춤형 교육,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실시 · 단계별 컨설팅 지원 · 컨설팅 전문성 강화 	판로 및 기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협동조합 선정 · 판로 지원 및 정책성과 공유 ·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	--


협업사업 지원


동업종 및 이업종 소상공인의
자발적 협업 촉진,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공동사업 지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간: 2월17일 ~ 6월30일(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자발적 협동조합 (조합원의 80% 이상이 소상공인이어야 함)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협업사업의 소요비용을 1억원 한도내 지원 (자부담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협동조합 자부담 우대: 25% * 부가가치세(VAT)는 협동조합 부담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개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후 교육이수(12시간) 및 선정금액에 대한 이행(지급)보증 보험증권 발급·제출 후 사업지원





지원항목별 지원내용 및 한도

- 
공동설비 (100백만원)
 - 조합 공동 생산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 * 제조설비, 위생설비, 검사설비, 운반기계, 차량등

- 
공동개발 (30백만원)
 - 공동시스템개발, 표준화비용 절감등을 위한 공정개선 레시피 및 판매기법 개발 등에 필요한비용
 - * 시스템개발, 연구개발, 판매등 각종기법 개발

- 
공동브랜드 (20백만원)
 - 조합 공동브랜드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 브랜드네이밍, CI, BI, 캐릭터 (시제품 제작 포함)

- 
공동마케팅 (50백만원)
 - 협동조합 관련 광고, 전시회 등 행사, 홍보물 제작 등 지원
 - * 온오프라인 광고,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 (키워드 광고 등 소요비용 추정이 어려운 항목은 지원 제외)

- 
공동네트워크 (20백만원)
 - 공동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 홈페이지, 쇼핑몰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사업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설립에서 운영까지 전반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조기 정착 및 경영안정화에 기여



- 지원기간: '17. 3.20 ~ 10.31
 - * 지원예산: 1,300백만원
- 지원횟수: 협동조합당 총 8회 이내(자부담금 10%)
 - * 조합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과 성장지원 컨설팅 중복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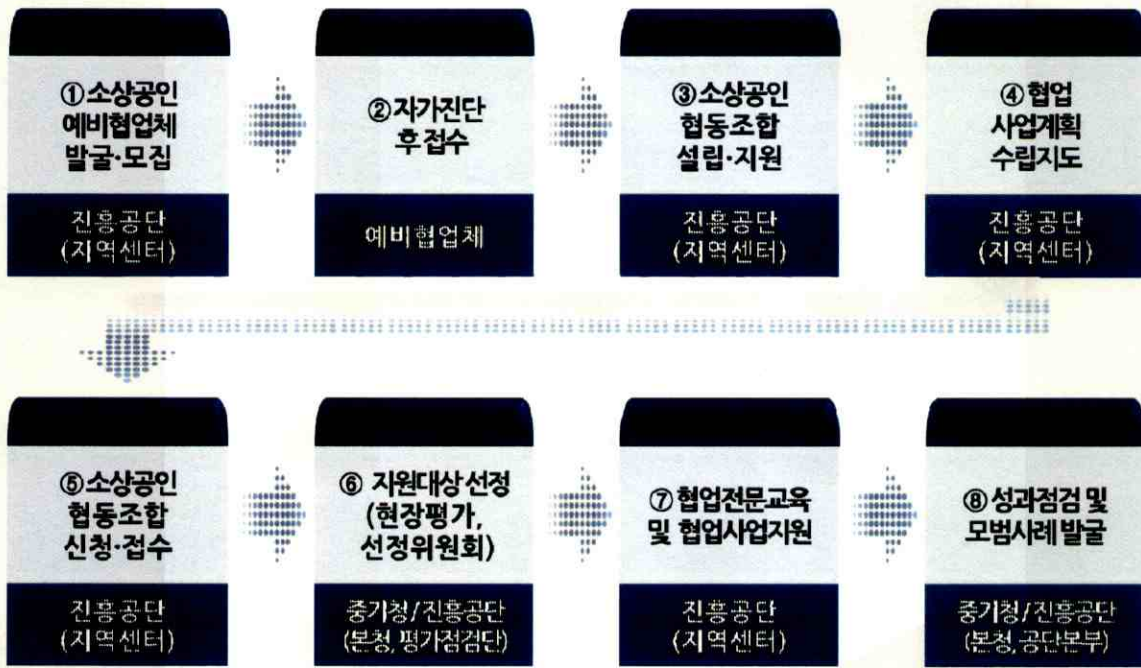


- (예비) 소상공인협동조합



- 조합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 협동조합 설립준비 및 협업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지도
- 성장지원 컨설팅
 - 소상공인협동조합 단계별 경영컨설팅(마케팅, 인사, 노무, 경영지도), 조직관리 및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컨설팅, 정밀진단을 통한 협동조합 사업정리 및 회생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절차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http://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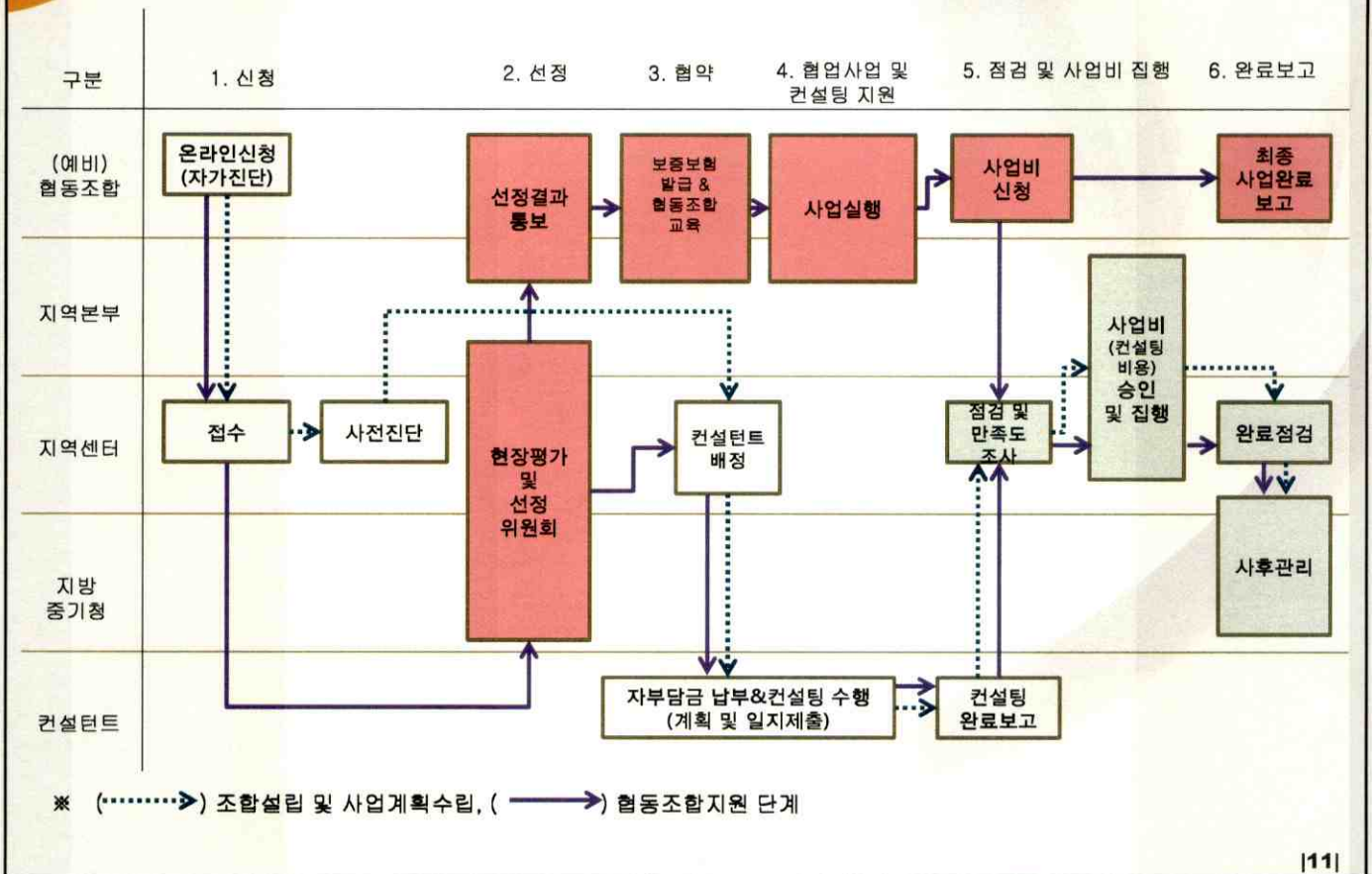
'16년 사업 주요내용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소상공인간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개발 등 공동의 사업을 통한 수익향상 및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과 경쟁력 향상의 계기 마련

* 컨설팅 및 협업 지원

'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지원 절차



1. 협업사업 지원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로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5년간 2,000개 협동조합 설립, 30,000개 소상공인참여
 *공동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판로개척, 수익향상

협업사업 지원 개요

동업종 및 이업종 소상공인의
자발적 협업 촉진,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공동사업 지원



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자발적 협동조합
(조합원의 80% 이상이 소상공인이여야 함)



조건

- 공동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협업사업의 소요비용을
1억원 한도 내 지원 (협동조합 자부담 30%)
* 청년협동조합 자부담 우대: 25%
* 부가가치세(VAT)는 협동조합 부담



규모

- 400여개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



분야

- 공동장소임차, 공동설비, 공동R&D,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네트워크 (총 6개 분야)



지원

-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사업지원
* 교육이수(12시간) 및 선정금액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제출,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원



131

협동조합 지원대상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자발적
협동조합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 등기 완료된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조합원의 80% 이상이 지원제외 대상 이외의 소상공인으로 구성
(대기업은 조합원으로 참여 할 수 없음)
* 조합원이 5인의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이여야 함
* 협동조합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인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협동조합 등기임원 전원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확인)
* 등기임원이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 청년협동조합 및 우대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가족(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이 협동조합 구성비율을 30% 이상인
경우 참여 제한

141

분야별 지원항목

- 
공동설비 (100백만원)
 - 조합 공동 생산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 * 제조설비, 위생설비, 검사설비, 운반기계, 차량 등
 - (유통에 부적합한 승용차 및 편의시설, 단순 사무용 기기 등 지원 제외)
- 
공동개발 (30백만원)
 - 공동시스템개발, 표준화비용 절감 등을 위한 공정개선 레시피 및 판매기법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 * 시스템개발, 연구개발, 판매 등 각종 기법 개발
- 
공동브랜드 (20백만원)
 - 조합 공동브랜드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 브랜드네이밍, CI, BI, 캐릭터 (시제품 제작 포함)
- 
공동마케팅 (50백만원)
 - 협동조합 관련 광고, 전시회 등 행사, 홍보물 제작 등 지원
 - * 온오프라인광고,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 (키워드 광고 등 소요비용 추정이 어려운 항목은 지원 제외)
 - * 기자원 조합의 경우 한도 70백만원
- 
공동네트워크 (20백만원)
 - 공동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 홈페이지, 쇼핑몰

※ 협동조합 자체 개발·생산 또는 개인이 진행한 개발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15]

협업사업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사업홈페이지(<http://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① 협동조합(이하 '조합') 이사장 및 조합원은 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조합 이사장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신청서 작성
- ② 조합 이사장은 조합 정보 및 사업비 신청 내역, 조합원 정보를 입력하고,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온라인 등록
 - * 증빙서류 원본은 선정 후, 지원협약체결 시 관할 센터에 제출 (미선정 조합은 제출하지 않음)
 - * 관할센터는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당해연도 내 지역본부로 이관

< 증빙서류 >

- ① 사업계획서
-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조합원 전원)
- ③ 협동조합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④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⑤ 조합원 전원 사업참여 및 중복 미가입에 대한 약속서
- ⑥ 등기임원 전원의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⑦ 소상공인 확인서류(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기타 사업 선정·평가를 위해 소상공인시장공단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

※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서류는 신청일 기준 유효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증명서만 인정

[16]

접수처리(센터)



온라인 서류검토

- 센터에서는 신청 조합의 자격요건 및 온라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된 증빙서류를 대조하여 검토



처리기한

- 신청이 완료된 날로부터 3일(영업일 기준) 이내



처리방법

- 협동조합에서 제출한 온라인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
- 센터는 처리결과에 대해 해당 조합으로 안내하여 후속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구분	처리조건	후속조치
접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 없음	.현장평가 등 향후 추진일정 안내
보완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 등 일부 보완 필요	.보완사항 안내
반려	.자격요건이 부적합	.반려사항 안내



처리결과 확인방법

- 협동조합은 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음

2.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협동조합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도를 통해 협동조합의 조기정착 및 경영안정화를 도모

*조합설립 및 사업계획수립, 성장지원컨설팅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설립에서 운영까지 전반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조기정착 및 경영안정화에 기여



개요

- 지원기간: '17. 3월 ~ 10월
- * 지원예산: 1,300백만원
- 지원횟수: 협동조합당 총 8회 이내(자부담금 10%)
- * 조합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과 성장지원 컨설팅 중복지원 가능



대상

- (예비) 소상공인협동조합



내용

- 조합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 협동조합 설립준비 및 협업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지도
- 성장지원 컨설팅
 - 소상공인협동조합 단계별 경영컨설팅(마케팅, 인사, 노무, 경영지도), 조직관리 및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컨설팅, 정밀진단을 통한 협동조합 사업정리 및 회생 컨설팅 지원

191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 내용



조합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 협동조합 설립준비 및 사업계획 수립 등 '17년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전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성장지원 컨설팅

- (경영컨설팅) 상권분석·마케팅·인사·노무·회계 등 경영지도 및 조합(법인) 운영 노하우 전수
- (전문컨설팅) 조직관리(갈등관리 등),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위기관리 대책능력 배양 등
- (정리컨설팅) 정밀진단 후 회생가능여부를 분석하여 맞춤형 지도
 - (회생가능) 협동조합(법인) 재무상태 등을 분석하여, 매출향상 및 원가절감 방안, 부채탕감계획, 판로확대 계획 수립 등 컨설팅
 - (회생불가) 사업전환, 타 조합과 합병, 휴·폐업 등 유도

201

협동조합컨설팅 지원대상



지원대상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조합원의 80% 이상이 아래 지원제외 대상 이외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기업은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 ② 협동조합이 지원제외 대상인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지원제외 대상 >

-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참고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프랜차이즈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 대기업 확인 : <http://www.kreport.co.kr>
 -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smba.go.kr> (로그인 필요)

컨설팅 지원 절차



협동조합 컨설팅 신청방법(조합설립및사업계획수립컨설팅)



조합설립 및 사업계획수립 컨설팅

○ 사업홈페이지(<http://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① (예비)협동조합 이사장 및 조합원은 공단 통합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예비)협동조합 이사장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신청서 작성
- ② (예비)협동조합은 온라인 자가진단 후, 협동조합 및 조합원 정보 입력, 증빙서류 일체를 스캔·온라인 등록 * 증빙서류 원본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증빙서류 >

-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구성원 전원)
- ②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
- ③ 소상공인 확인서류(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속 조합원의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중 소기업청 발행 '소상공인 확인서' 중 택일
- ④ 기타 사업 선정·평가를 위해 소상공인시장공단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

협동조합 컨설팅 신청방법(성장지원컨설팅)



성장지원 컨설팅

○ 사업홈페이지(<http://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① (예비)협동조합 이사장 및 조합원은 공단 통합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예비)협동조합 이사장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신청서 작성
- ② (예비)협동조합은 온라인 자가진단 후, 협동조합 및 조합원 정보 입력, 증빙서류 일체를 스캔·온라인 등록 * 증빙서류 원본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증빙서류 >

-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구성원 전원)
- ② 협동조합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③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
- ④ 소상공인 확인서류(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속 조합원의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중 소기업청 발행 '소상공인 확인서' 중 택일
- ④ 기타 사업 선정·평가를 위해 소상공인시장공단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 1588-5302



대한민국 재도약의 힘,
창조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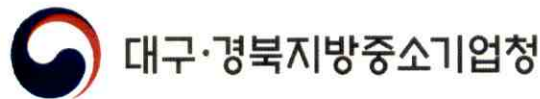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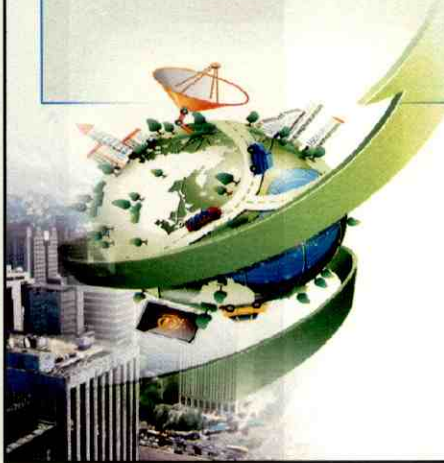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발 · 공유 · 소통 · 협력]

3 지역특구 활성화 방안 설명자료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17년 대구·경북 지역특구 - 발전 및 활성화 지원방안 (설명자료)



Contents

I 지역특구 운영 활성화 추진

- 참고 1 : 수출단계 100대 수출품목
- 참고 2 : 지역특구 100대 품목 선정 현황
- 참고 3 : 특구내 기업 우대지원 현황
- 참고 4 : 지역 특구마크 활용 예시
- 참고 5 : 특구제품 및 특구기업 확인서

II 특구상품 특성화시장연계 판로지원

- 참 고 : 특구상품 전시/판매대 설치협의 공간



I

지역특구 운영 활성화 추진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 >

- **[지역특구 현황]** 138개 시·군·구에 184개 특구 지정 및 운영(16.12말 기준)
 - * 유형별 구분 : 향토자원(89개), 관광레포츠티(45개), 교육(29개), 산업연구(21개)
 - * 대구·경북 31개 특구 : 향토자원(19개), 관광레포츠티(6개), 교육(3개), 산업연구(3개)

■ 지역특구 100대 품목 선정 및 특구마크 활용 지원

- 국가가 지정한 지역특구에서 생산되는 상품임을 인정하는 특구 상징마크를 활용, 상품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 해당 시·군·구에서는 관련제품 확인서 발급 및 마크 활용권 부여



지역특구 마크

■ 지역특구 내 중소·중견기업 수출·판로 연계 지원

- 100대 품목 생산기업 수출단계별 구분, 관련사업 연계·우대 지원(별첨 참조)
 - * (초기기업)해외유통망 연계 등 수출역량 강화, (유망기업)해외인증획득, 무역촉진단 등 시장 확대, (전략기업)GMD 매칭, 글로벌 온라인마케팅지원 등 신시장 개척

• 특구기업 우수상품의 내수판로망 확대 지원

* 특성화시장, 대형마트 등과 협업으로 특판전 개최, 상설 전시·판매장 개설 등을 통해 우수 제품은 대형유통망, 공영홈쇼핑, 기타 정책매장 등으로 연계 입점 지원

참고1 수출단계 100대 수출품목

구분	선정기준	대표제품	해당특구	참여사업
수출 전략 (28개)	수출 20억 이상, 2개국 이상 수출	안경테, 유자차, 인삼류 등	대구안경특구 등 14개	고성장수출경쟁력강화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해외전시회참가 등
수출 유망 (28개)	수출 2억~20억, 1개 국가 수출	파프리카, 선인장, 마스크팩 등	완도해조류특구 등 24개	수출경쟁력강화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해외전시회참가 등
수출 초기 (44개)	수출 2억 이하, 수출첫걸음 제품	시리얼, 병입, 삼푸 등	제천약초웰빙 특구 등 21개	수출경쟁력강화사업 해외전시회참가 등

참고2 지역특구 100대 품목 선정현황

특구	100대 품목	대분류	소분류	수출구분	주요수출국
전 특구 공통	과일가공품	식품	가공식품	초기품목	향후 수출가능
대구안경특구	안경테	생활	패션잡화	전략품목	일본, 미국, 중국, 독일
	콘택트렌즈	생활	의료기기	전략품목	
청도반시특구	단감	식품	농산물	전략품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칠곡양봉특구	화장품	생활	화장품	유망품목	중국
김천포도특구	포도(자옥)	식품	농산물	유망품목	홍콩, 대만, 싱가포르, 중국
상주고랭지특구					
상주곶감특구	감가공품	식품	가공식품	유망품목	미국, 캐나다, 베트남, 홍콩
성주참외특구	참외	식품	농산물	유망품목	일본,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안동산약마특구	마가공품	식품	가공식품	유망품목	미국, 중국, 캐나다
포항구룡포과메기특구	과메기	식품	가공식품	초기품목	중국, 베트남
문경오미자특구	오미자가공품	식품	가공식품	초기품목	홍콩, 중국
상주고랭지특구	포도가공품	식품	가공식품	초기품목	중국

참고3 특구내 기업 우대지원 현황

수출지원사업

사업명	주관	사업내용	우대사항	비고
수출성공패키지	중기청	글로벌 역량에 따라 수출기업화, 수출고도화로 구분하여 수출 전 과정(준비, 마케팅활용 등) 패키지 지원	가점(1점)	
해외유통망 진출지원사업	중기청 (중진공)	해외정책매장, 대리점 등을 통해서 상품성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제품(B2C)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가점(2점)	
해외규격획득 지원사업	중기청	수출 대상국가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50~70%)	가점(2점)	
GMD활용 수출촉진	중기청 (중진공)	수출기업과 GMD 매칭하여 시장개척 수출대행 등을 연계지원	유망기업 pool 포함 매칭 지원	
차이나하이웨이 사업	중기청 (중진공)	중국 진출 또는 진출예정 기업에 대해 마케팅 비용의 70% 지원	가점(1점)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중기청	고성장기업에 수출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50~70%)	가점(1점)	

참고3 특구내 기업 우대지원 현황

사업명	주관	사업내용	우대사항	추진방법
전시회 참여지원	KOTRA	KOTRA 해외전시회 한국관 전시를 통한 제품수출 지원	특구 소재 기업 우대	추후공지 (협의 중)
수출첫걸음지원	KOTRA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위원 1:1 매칭 수출지도	특구 기업 1:1 매칭지원	
해외지사화사업	KOTRA	KOTRA 해외무역관이 해외지사화와 같은 역할을 수행	참가비 10% 할인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지원	KOTRA	buyKOREA.org 를 운영하여 수출 제품의 홍보 지원	사이트 내 특구관 신설	
전문무역상사 상담회	무역 협회	전문 무역상사와 특구기업간 지역별 1:1 수출 맞춤 상담 지원	특구 기업 참여시 우대	
무역교육	무역 협회	수출과 관련한 현장형 무역실무 교육	특구 기업 교육 지원	
K-Mall 24, Trade korea	무역 협회	온라인 해외 직판, 미니 사이트제작 및 해외 온라인 홍보	특구 기업 참여시 우대	
글로벌바이어 초청 상담회	무역 협회	협회 보유 바이어 DB활용(140만개) 유망 바이어와 수출 상담 지원	특구 기업 참여시 우대	

참고3 특구내 기업 우대지원 현황

● 자금, R&D 등 판로지원 우대사항

분야	사업명	우대사항	주관
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	잔액기준 한도 증액(45억 → 70억원)	중기청 (기업금융과)
R&D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첫걸음/지역유망중소기업육성)	평가 시 가점(2점)	중기청 (기술협력보호과)
판로	중소기업마케팅 역량강화	평가 시 가점(2점)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평가 시 가점(2점)	
기타	소공인 특화지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집적지구 신청 시 가점 부여(5점)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과)
	문광형시장, 골목형시장 선정사업	평가 시 가점(2점)	중기청 (시장상권과)

● 중앙부처 우대사항

사업명	주관	우대사항	비고
물부리기업육성사업(과제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지 가점(1점)	
농촌자원복합산업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 선정시 우대 및 가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 자세한 문의는 중기청 지역특구과(042-481-1603)로 문의

참고4 지역특구 마크 활용(예시)

활용주체	공 통(기본)		개 별 특 구(예시)
특구운영 지자체	(예시1)국문  지역특화발전특구 (예시2)국영문혼용  지역특화발전특구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ZONE	(예시3)영문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ZONE	(예시1)국문  홍천청정산양삼산업특구 (예시2)국·영문혼용  홍천청정산양삼산업특구 HONGCHEON CLEAN HONEYWAX GINSENG INDUSTRY SPECIAL ZONE
특구상품 생산기업	(예시1)국문  +  홍천청정산양삼산업특구	(예시2)국영문혼용  +  홍천청정산양삼산업특구 HONGCHEON CLEAN HONEYWAX GINSENG INDUSTRY SPECIAL ZONE	

업무표장 출원(16.9월), 등록(17.5월 예정), 특구마크 사용지침 및 매뉴얼북 지자체 통보 완료

참고5 지역 특구제품 및 특구기업 확인서

특구제품 확인서

제2017- 호

지역특구 제품 확인서 (제품명 :)

- 특구의 표시
 - 지역특구명 :
 - 지정일자 :
 - 특화사업자 :
- 인적사항
 - 업체명 :
 - 대표자 :
 - 사업자번호 :
 - 주소 :
 - 업체유형 : ①생산·가공·판매업 ②가공·판매업 ③판매업
- 유효기간 :

위 제품은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 위치하고 특화사업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법인/조합)에서 생산한 제품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군·구청장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특구기업 확인서

제2017- 호

지역특구 중소기업 확인서

- 특구의 표시
 - 지역특구명 :
 - 지정일자 :
 - 특화사업자 :
- 인적사항
 - 업체명 :
 - 대표자 :
 - 사업자번호 :
 - 주소 :
 - 유효기간 :

위 업체는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 위치하고 특화사업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법인/조합)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군·구청장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II 특구상품 특성화시장 연계 판로지원

- 특구內의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국내·외 시장 개척을 필요로 하나 **홍보 및 판로망이 부족한 상황**

* 대구·경북 지역특구는 '04년 최초 지정 이래 매년 증가하여, '16년 31개로 성장

- 우수 기능성 제품 등에 대한 판로 다변화 지원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현장 목소리) 판로개척 애로, 유동인구 많은 전통시장 또는 대형매장 등과 연계 희망

- (수요조사) 최근 3년 이내 선정되어 포상을 받은 우수특구(3개) 제품 또는 일반 소비자에게 구매력 있는 특구제품(지자체 수요조사 및 추천)

* (참여특구) 청도반시나라특구, 문경오미자특구, 영양고추특구, 안동마특구, 포항과메기 특구, 대구패션주얼리특구 등 **총 6개 특구**

* (참여제품) 청도 2, 문경 2, 영양 3, 안동 1, 포항 3, 대구 2 등 **총 13개사 55품목 추천**

참고 특구상품 전시/판매대 설치협의 공간

서남신시장

시장명	상인회 및 상인회장 의견	상인회
서남신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유동인구 약 8,000명으로 도심 주거밀집지역 인근 소재 -고객휴게실 공간을 활용한 지역특산품코너 개설 검토 가능 -시장판매 품목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특구와 1:1 협약체결보다는 다양한 특구 우수상품을 공급하여 취급 희망 -現스넥코너(상인회에서 인력고용)와 병행·운영하여 위탁판매 형식으로 운영검토 가능(특구는 제품공급, 상인회 위탁판매) -기존 진열장을 활용할 경우, 상품관 또는 특판매대 설치에 따른 별도비용 소요는 없으며, 상설화 운영도 검토가능 <p>* 현재 수익사업이 가능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17년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p>	현오종 회장

참고 특구상품 전시/판매대 설치협의 공간

서남신시장



서남신시장內 고객휴게실 전경



고객휴게실內 특구상품 진열 공간(검토)

참고 특구상품 전시/판매대 설치협의 공간

대구약령시

시장명	상인회 및 상인회장 의견	상인회
대구약령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 중심부 근대골목투어 2코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간 130만명(외국인 1만 2천명, 유커 6천명) 이상 관광객 방문 -한방관련 특화시장으로 관광객 기호를 충족할 다양한 상품 구비에 한계가 있고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도 다소 고가 -관광객 대상 으로 고객쉼터(청춘살롱) 전시장을 활용할 경우 특판 매대 설치에 따른 별도비용 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 -위탁판매 방식의 상설운영 검토가 적합하나, 상인회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음에 따라, 판매주체 마련이 고민 -현재 5월을 목표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합 설립이 완료되면 조합차원에서 운영검토 가능 * 현재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관광객 대상 상품다양화 노력 중에 있으므로 특구상품 연계/판매 검토가능 	우영진 단장

참고 특구상품 전시/판매대 설치협의 공간

● 대구약령시



대구약령시內 고객지원센터 전경

고객센터內 특구상품 전시 공간(검토)

- 계명문화대와 성서아울렛 판매공간 활용, 매대설치 협의 중에 있으며, 대구은행에도 공동추진을 제안
- 4월말~5월초 봄내음 전통시장 축제와 연계, 특판전 개최 검토 가능하나 특구기업의 참여의지가 관건

1357-

문의 : 제품성능기술과 ☎ 053-659-2288
기업환경개선과 ☎ 053-659-2266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성공도우미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중소기업 성공길잡이 기업마당  www.bizinfo.go.kr





대한민국 재도약의 힘,
창조경제

메 모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